

정 관 변 경 보 고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변경보고

근로자이사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근로'→'노동'으로 용어 변경

□ 보고근거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정관)

□ 개정개요

-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서울특별시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재단 정관내 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정(공기업담당관-3904(2019.3.29.))

□ 주요내용

항목	주요 개정 내용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근로자이사'→'노동자이사'로 용어 변경
제9조(임원의 임면)	'근로자이사'→'노동자이사'로 용어 변경 '근로자'→'노동자'로 용어 변경
제10조(임원의 임기)	'근로자이사'→'노동자이사'로 용어 변경 '근로자'→'노동자'로 용어 변경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근로자이사'→'노동자이사'로 용어 변경

□ 향후계획



※ 추진절차 관련 근거

- ①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정관)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 의결 → 시장 승인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 3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1부. 끝.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u>3. 근로자이사 1인 <신설 2017.10.16.></u> 4.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p>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u>3. 노동자이사 1인 <신설 2017.10.16.></u> 4.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p>제9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3.13.></p> <p>②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재단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 중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p>	<p>제9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3.13.></p> <p>②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재단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 중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p>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③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u>근로자 이사</u> 및 나머지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7.10.16.〉</p> <p>④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삭제〉〈개정 2016.6.28〉</p> <p>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5.9.25.〉 〈삭제〉〈개정 2016.6.28〉</p> <p>5.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1인〈개정 2012.8.16〉</p> <p>⑤감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1인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p> <p>⑥<u>근로자이사</u>는 <u>근로자투표</u>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7.10.16.〉</p>	<p>③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u>노동자이사</u> 및 나머지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7.10.16.〉</p> <p>④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삭제〉〈개정 2016.6.28〉</p> <p>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5.9.25.〉 〈삭제〉〈개정 2016.6.28〉</p> <p>5.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1인〈개정 2012.8.16〉</p> <p>⑤감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1인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p> <p>⑥<u>노동자이사</u>는 <u>노동자투표</u>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신설 2017.10.16.〉</p>	
<p>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근로자 이사</u>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u>근로자투표</u>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6., 개정 2019.02.27.〉</p> <p>②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이사장 포함〉 및</p>	<p>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u>노동자이사</u>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u>노동자투표</u>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6., 개정 2019.02.27.〉</p> <p>②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이사장 포함〉 및</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8.8.〉</p> <p>③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개정 2018.8.8.〉</p> <p>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18.8.8.〉</p>	<p>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8.8.〉</p> <p>③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개정 2018.8.8.〉</p> <p>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18.8.8.〉</p>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삭제 2018.8.8.〉</p> <p>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10.16.〉</p> <p>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8.〉</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8.〉</p> <p>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8.8.〉</p> <p>6.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개정 2018.8.8.〉</p> <p>7. <u>근로자이사</u>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자〈신설 2017.10.16.〉</p>	<p>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삭제 2018.8.8.〉</p> <p>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10.16.〉</p> <p>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8.〉</p> <p>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8.〉</p> <p>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8.8.〉</p> <p>6.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개정 2018.8.8.〉</p> <p>7. <u>노동자이사</u>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자〈신설 2017.10.16.〉</p>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p>당하는자<신설 2017.10.16.></p> <p>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8.8.8.></p> <p>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끊지 아니한다.</p>	<p>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8.8.8.></p> <p>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끊지 아니한다.</p>	

붙임 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정 2002.01.24.
개정 2003.11.21.
개정 2004.07.02.
개정 2005.01.05.
개정 2006.01.01.
개정 2007.03.23.
개정 2007.07.01.
개정 2008.01.14.
개정 2008.07.16.
개정 2008.08.19.
개정 2008.12.30.
개정 2011.12.30.
개정 2012.08.16.
개정 2013.03.13.
개정 2015.09.25.
개정 2016.06.28.
개정 2017.10.16.
개정 2019.0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및 성인지력 향상사업
3.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0.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1. 그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여성·가족 관련 연구도서 및 간행물 발간, 출판연구도서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신설 2013.3.13〉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이 공고·고시할 사항은 당해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개정 2018.8.8.〉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근로자이사 1인 〈신설 2017.10.16.〉
4. 이사 20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인

제9조〈임원의 임면〉 ①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단,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개정 2013.3.13.〉
②임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재단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 중 시장이 해임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근로자 이사 및 나머지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7.10.16.〉
④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삭제〉〈개정 2016.6.28〉

3.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개정 2015.9.25.〉

〈삭제〉〈개정 2016.6.28〉

5.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이 추천하는 성평등위원회 위원 중 1인〈개정 2012.8.16〉

⑤감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며, 1인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⑥근로자이사는 근로자투표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신설 2017.10.16.〉

제1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0.16., 개정 2019.02.27.〉
②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이사장 포함〉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8.8.8.〉

③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개정 2018.8.8.〉

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개정 2018.8.8.〉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서울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서울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전문가
2. 여성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6.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재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①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②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자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제9조 제4항 각 호의 당연직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18.8.8.>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10.16.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8.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8.8. >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8.8. >
 6.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개정 2018.8.8. >
 7.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자<신설 2017.10.16. >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8.8.8. >
- ②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5조<직원의 임면> ①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 한다.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삭제><개정 2016.6.28. 2018.8.8.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1조<대리인의 선임>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2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및 정원규정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장 이 사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8.8.8.>

제26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에서 업무상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로 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17.10.16.>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은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 ·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위 원 회

제30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 ③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지정기부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개정 2015.9.25.>>
- ④제3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한다.<개정 2015.9.25.>>

제33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의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개정 2013.3.13>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3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6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시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8.8.〉

②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제37조<결산> **제37조<결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5., 2018.8.8.〉

②〈삭제 2018.8.8.〉

③〈삭제 2018.8.8.〉

④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제38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개정 2015.9.25.〉

제42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제및정원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사업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법인 설립일부터 최초의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서울특별시 여성정책관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법인 설립일 부터 3월 이내에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별표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연번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예금>	1백만원	

위 「재단법인 서울여성」 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1년 11월 16일
재단법인 서울여성 발기인 일동

부 칙 <2003.11.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및 직제 개·폐 등에 의한 적용> 제7조 제1항의 이사장 및 제7조 제4항의 당연직 이사는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4.07.0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1.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0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사회운영규정 제18조의 의사록 기명날인을 출석이사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한다.

부 칙 <2007.03.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